

검 토 보 고 서

■ 조례명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 제18조 제5항중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를 삭제함.

■ 개정사유

-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18조 제5항중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와 중복되므로 삭제코자함.

■ 검토결과(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이 '9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등 모든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제5항중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하는 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중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⑤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u>의견진술 기회의 부여</u>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p> <p>⑤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